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
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·전승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하고,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·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5. ~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3호에 커목을 터목으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커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	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설립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한다
-----------------	--

별표 2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아.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방·군사시설(군사보안시설에 한정한다)은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(법 제11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)를 거쳐 군의 작전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별표1]

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,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(제13조제1항 관련)

현행		개정안	
시설의 종류	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	시설의 종류	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
1~2. (생략)	(생략)	1~2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3. 개발제한 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	(생략)	3. 개발제한 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	(현행과 같음)
가~처. (생략)	(생략)	가~처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<신설></u>	커.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티. (현행과 같음)	<u>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설립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.</u>

[별표2]

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(제22조 관련)

현행	개정안
2.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.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 하되 높이 5층 이하, 용적률 300퍼 센트 이하로 한다. 나 ~ 사. (생략) <u>아. (신설)</u>	2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 ~ 사. (현행과 같음) <u>아.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방·군사시설 (군사보안시설에 한정한다)은 국방부장 관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(법 제11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)를 거쳐 군의 작전수행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 축물의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45